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가.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특수경력직의 민간경력직을 삽입하여 연가를 가산 할 수 있도록 하며

나. 경조사별 휴가일수 및 연가일수의 산정방식 변경 그리고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춘 선서문 개정(안 제2조 별표1)

나. 특수경력직 공무원 연가가산 가능 경력 규정(안 제18조의2 별표4)

-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재직기간 2년 미만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일수 산정시 연가를 가산할 수 있는 민간경력 규정 삽입

다.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마련(안 제19조)

-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 할 수 있는 사유를 자치단체의 장이 마련하도록 규정

라. 연가일수 공제사유 추가

- 강등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

4. 관련법령

가. 국가·지방공무원 복무규정

나.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

나. 공무원 징계령

5. 검토의견

□ 제출자, 개정이유, 주요내용, 관련법령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.

○ 본 조례의 일부개정의 주요사유는

공직에 임하는 첫 자세로 선서를 함에 기존의 “공직자로서의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”에서 “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”로 개정하여 공무원의 핵심적 공직가치를 명시하고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경력을 당초 2년 기준 별도가산 하였으나 유사경력 유무로 그 구분을 통일적용하며 공무원징계령이 2009년 3월 18일 변경 되어 중징계에 파면, 해임, 강등 또는 정직으로 하는 바, 강등으로 인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차년도 연가를 범위 내에서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자 함 입니다

○ 이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을 동일화하고 그 현실성에 맞게 연가의 산정 및 사용일수 적용일자를 개정하고자 함으로 대통령령 제22275호에 의거 2010년 10월 16일부터 적용코자 합니다.

○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